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6월 9일  
복지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5월 31일, 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5월 3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4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최 중  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6월 9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# 가. 제안이유

-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사기 진작과 직업 의식 고취를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 증진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전입한 주민이 전출 지역과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를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며, 그 밖에 별표상의 세부 규정을 관계법령 및 사업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 근거 규정 마련 (안 제6조제2항제4호)
- 전입 주민 중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지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전국으로 확대(안 제7조제6항)
- 수집·운반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

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50리터에서 30리터로 변경 (안 별표 2의 2  
공사장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 가격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-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및 종량제봉투의 배출 등을 사업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

#### 2) 주요내용

-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 사업 지원 근거 규정 마련 (안 제6조제2항제4호)
  -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 보조사업이 2023년 첫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근거를 마련함

대행업체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지원

- 규 모 : 직영(103명), 대행(125명)
- 지원내용 : 명절 격려비, 휴양소 지원 등
- 보 조 금 : 51,260천원

- 전입 주민 중 기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지역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전국으로 확대(안 제7조제6항)
- 수집·운반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용 종량제 봉투의 용량을 50리터에서 30리터로 변경

**다. 검토의견**

- 본 개정안은 청소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 증진과 전입주민이종량제 봉투의 배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업현행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「폐기물관리법」의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생략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